

대전지방법원 2023. 9. 21 선고 2023가단326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합자회사 A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

변 론 종 결 2023. 8. 31.

판 결 선 고 2023. 9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7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가 2015. 9.경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면 소재 E 진입도로 가감차선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 완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87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가.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

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가.항 기재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 105,116,744원을 구하는 소(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1748)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는 이미 기각된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,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부가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위 공사대금 채권(원고는 전소에 청구한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)은 역수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발생은 공사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성대